

# 2026년 1/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

구 미 시

# 2026년 1/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  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관련근거

「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“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보고함.

## 2. 예비비 집행 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승인액	지출액	비고
하천과	효율적인하천관리 및수변도시조성	하천행정관리	하천행정관리	배상금등	65,585,000	65,584,200	

## 3. 예비비 지출 사유

가. 2024가단201540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

- 1) 구미시 원평동 1-3번지 등 8개 필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(구미시)를 상대로 진정명의(6.25 전쟁으로 멸실된 지적공부 복구)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확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(원고 7명)가 이루어졌으나 행정목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어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
- 2)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65,584,200원 청구에 따른 지급 및 미지급 시연 5%의 지연손해금까지 추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

#### 4. 사업별 집행 내용

##### 가. 2024가단201540 부당이득금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

###### 1) 사건개요

- 사건번호 :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1540 부당이득금
- 원 고 : 서○○ 등 7명
- 피 고 : 대한민국, 구미시
- 확정금액 : 금6,877,181원(소송비용액)

###### 2) 최종판결

###### ○ 피고는

1. 가. 피고 구미시는 원고 7명에게 58,024,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
1. 나. 2024. 1. 26.부터 사건 토지의 피고 구미시의 점유 종료일까지 원고 서○○ 등 7명에게 월 2,732,675원의 돈을 지급하라
2. 원고들의 피고 구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구미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 구미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#### 3) 판결금 지급 내역(주문1.나.)

- 지급금액 : 금65,584,200원(2024. 1. 26. ~ 2026. 1. 25. 토지사용료)

이름	2024년	2025년	2026년	계
합계	30,588,331	32,792,100	2,203,769	65,584,200
서○○	9,083,811	9,738,264	654,453	19,476,528
김○○	2,039,218	2,186,136	146,918	4,372,272
서○○	1,359,479	1,457,424	97,945	2,914,848
서○○	1,359,479	1,457,424	97,945	2,914,848
서○○	1,359,479	1,457,424	97,945	2,914,848
서○○	6,303,054	6,757,164	454,110	13,514,328
서○○	9,083,811	9,738,264	654,453	19,476,528

※(주문1.가.)소송배상금 71,855,312원 및 소송비용액 6,877,181원 지급완료

# 관 계 법 령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)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최되는 회기에 보고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.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조 민 규
	팀 장	김 원 대
	담 당 자	정 성 민 (480-2532)